

1. 개정이유

현재 체불근로자가 소액채당금 지급 청구시 구비서류로 판결문·확정증명원 정본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본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근로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체불임금 등의 사업주 용자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한편, 일반·소액채당금 지급청구서 서식 개선 등을 통해 그간의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액채당금 지급 청구시 구비서류로 판결문·확정증명원 사본 제출 근거 마련(안 제5조)
- 나. 체불임금 등의 사업주 용자 납부기한 연장 근거 마련(안 제8조의10)
- 다. 일반·소액채당금 지급청구서 등 서식 변경(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등 서식)
- 라.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서식 변경(별지 제7호의3 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가목의 “정본”을 “정본 또는 사본”으로 하고, 제5조제2호나목의 “정본”을 “정본 또는 사본”으로 한다.

제8조의10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이 발생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부득이하게 납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7조의2에 따른 체불임금등의 사업주 용자 업무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제3호의2서식, 제4호서식, 제6호의4서식, 제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채당금의 지급 청구)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채당금(이하 "채당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채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법 제7조제4호에 따른 채당금(이하 "소액채당금"이라 한다)의 지급 청구: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소액채당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 가.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u>정본</u>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u>정본</u> 1) ~ 3) (생략)	제5조(채당금의 지급 청구)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u>정본 또는 사본</u>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u>정본 또는 사본</u> 1) ~ 3) (현행과 같음)

다. (생략) 제8조의10(융자 금액과 융자 조건) ① (생략) ② 융자받은 금액은 1년 거치(据置) 후 2년 간 분할 상환한다. ③ (생략) 제13조(업무처리규정) 공단은 영 제 2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 1. (생략) <신설> 2.·3. (생략)	다. (현행과 같음) 제8조의10(융자 금액과 융자 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융자받은 금액은 1년 거치(据置) 후 2년 간 분할 상환한다. <u>다만,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이 발생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부득이하게 납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u>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업무처리규정)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법 제7조의2에 따른 체불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업무</u> <u>3.·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u>
---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퇴직한 날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	년	월	일	체불임금등	임금	원
						휴업수당	원
퇴직금						원	

대상 사업주	사업장명		① 사업의 종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근로자수		전화번호		
	소재지	본사 사업장			

사업 활동 현황	사업개시일(년 월 일), 사업정지일(년 월 일)
----------	--

사업주의 소재 파악 여부	[]소재 파악 가능 []소재 파악 불가능
---------------	--------------------------------------

재판상 도산의 신청 여부	[]신청 []미신청
---------------	--------------------------

②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지정신청 여부 (신청 가능한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	[]희망 []희망하지 않음
--	------------------------------

위의 사업주는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로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체당금 지원 공인노무사 지정신청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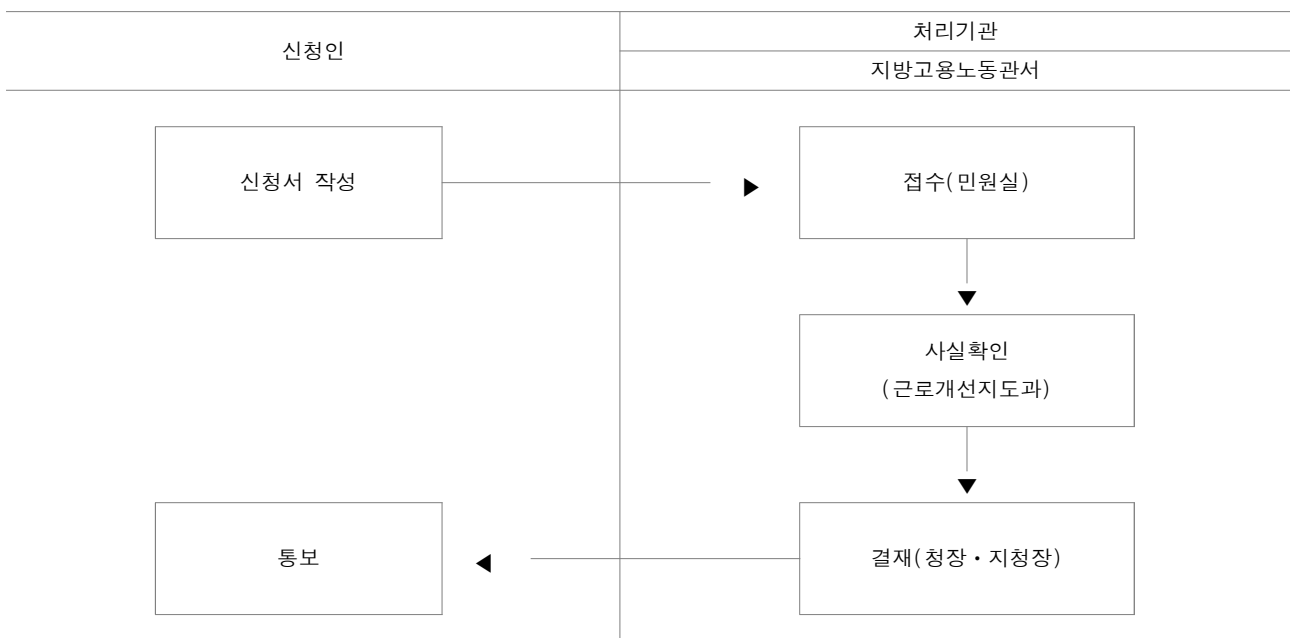
- ① 사업의 종류란에는 건설업, 운송업, 도매업, 소매업 또는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적고, 그 밖에 경우에는 모두 일반산업으로 적습니다.

유의사항

1.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1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외의 근로자는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②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면서, 해당 사업장의 전체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인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및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수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이전에 해당 사업을 한 최종 6개월(1개월 중 하루라도 사업을 한 경우 그 달을 포함한 최종 6개월을 말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사업을 한 일수로 나눈 수로 한다.
(건설업의 경우에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으면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따라 부당이득액이 환수되며, 최대 부당이득액만큼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일반채당금 지급청구서

[체당금(替當金)이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접수번호	②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③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청구인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⑦체당금(*) 원	⑧체당금 구분(*)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입금 의뢰	⑨입금은행
	⑩예금주
	⑪계좌번호

대상 사업주	사업장명	⑫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⑬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가입 []미가입	⑭확인통지서 대장번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청구인

대리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처 리	선람		결 재	담당	차장	부장	본부장(지사장)
	조회확인						
	입력확인						
공지사항							

- 이 민원의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로 전화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으면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따라 부당이득액이 환수되며, 최대 부당이득액만큼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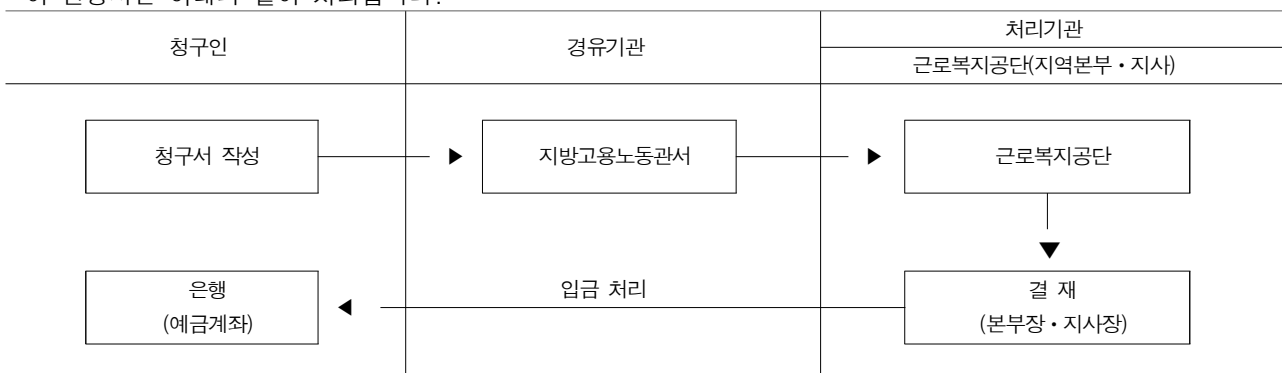
작성 방법

굵은 선 안의 별표(*)는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⑨~⑪란에는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본인의 예금계좌 중에서 체당금을 지급받기 희망하는 예금계좌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체당금 지급청구서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확인신청서와 함께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액채당금 지급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근무기간 및 퇴직일	①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번호		
	년 월 일 ~ 년 월 일			
	②소(訴)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날	③판결등이 있는 날	④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	
	원			
	⑤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에 대하여 채당금 지급청구일까지 사업주나 퇴직연금사업자 등으로 부터 지급받은 금액(사업주 지급금, 퇴직연금, 이행보증보험 및 출국만기보험 등의 금액) 원 가. 지급청구일까지 지급받지 못했으나, 향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을 퇴직연금이 있습니까? []에 []아니오 나. 지급청구일까지 지급받지 못했으나, 향후 이행보증보험 및 출국만기보험으로 지급받을 보험금이 있습니까? []에 []아니오			
⑥청구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금액 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원 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원				
⑦지급받아야 할 채당금 원				

⑧임금 의뢰	입금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⑨대상 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채당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⑩ 첨부서류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사본	수수료 없음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본인은 귀 기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제1항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 법률구조공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소액채당금 지급 등의 처리 업무에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관련 자료를 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으면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따라 부당이득액이 환수되며, 최대 부당이득액 만큼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이 민원의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전화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번호"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번호를 말합니다.
 - ② "소(訴) 제기일 또는 신청 등을 한 날"은 **체불 임금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장을 제출하거나 신청 등을 한 날을 말합니다.
 - ③ "판결등이 있는 날"은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및 청구의 인낙 등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날을 말합니다.
 - ④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총 확정금액"은 법원에서 판결등을 통하여 인정되어 확정된 체불 임금등을 말합니다.
 - ⑤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총 확정금액에 대하여 현재까지 사업주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법원에서 확정된 체불 임금등 중 지급청구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업주나 퇴직연금사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등이나 퇴직연금 등의 금액을 말합니다.
 - ⑥란의 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제출일 현재 기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전체 체불임금 중 퇴직일로부터 최종 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말합니다.
 - ⑥란의 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제출일 현재 기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전체 체불 임금등 중 퇴직일로부터 최종 3년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말합니다.
 - ⑦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은 ⑥란의 "가" 와 "나"의 합계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합계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시한 그 금액의 상한이 지급받게 될 체당금의 금액이 됩니다.
 - ⑧ "임금의뢰"란에는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본인의 예금계좌 중에서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희망하는 예금계좌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 ⑨ "대상사업주"란에는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등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입사일	년 월 일	임금 지급일	매월 일

대상 사업주	사업장명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상시근로자수
	소재지	

확인 신청 사항	1.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당시의 연령 3.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4.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5. 해당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된 날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사실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본인은 귀 기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체당금 등의 확인 업무에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자료를 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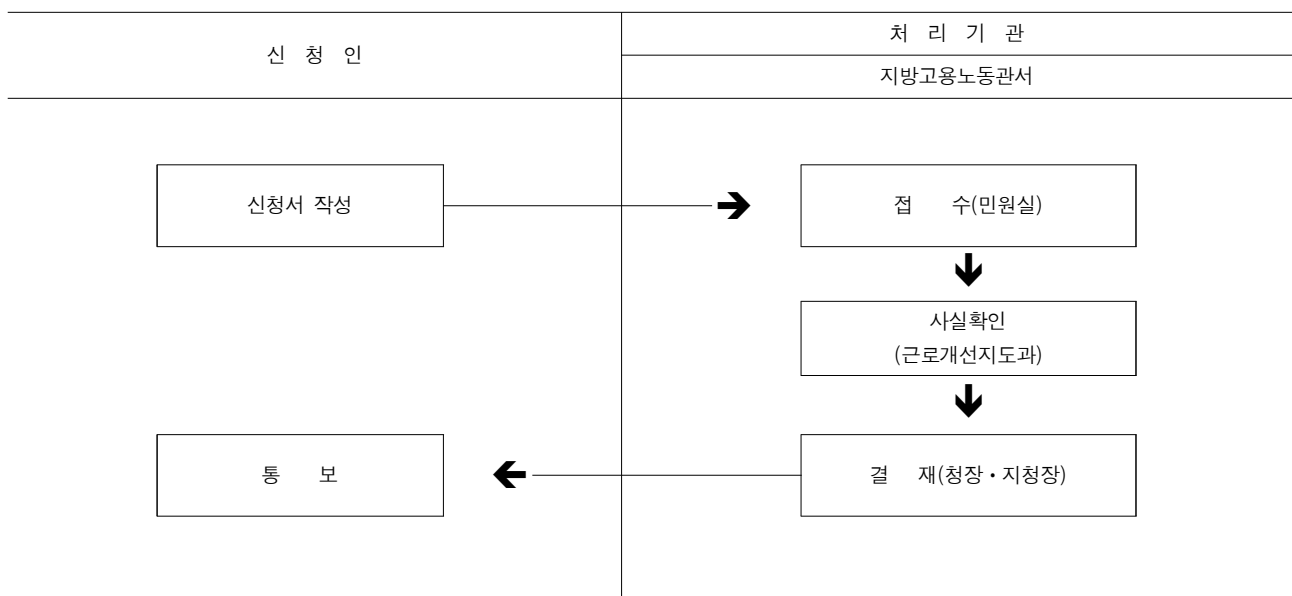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방법

1. 입사일란에는 대상사업장에 신청인이 입사했던 날을 적고, 임금지급일란은 대상사업장에 근무할 당시의 임금지급일을 적으며, 대상사업주란은 신청인이 퇴사할 당시의 사업장에 대한 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으면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따라 부당이득액이 환수되며, 최대 부당이득액만큼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

발급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5일
------	-----	-----	------	-----

1. 신청인 (사업주)	사업장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업종(주산품)
	상시근로자수 명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소재지	(전화:)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

2. 확인 신청 사항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임금 등 미지급 사유)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하는 사실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의 사업장인 사실 4) 용자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입사일 및 퇴직일(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여부) 5)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용자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체불금품 총액
-------------------	---

3. 융자금 지급대상 근로자 및 체불금액: 다수일 경우 별지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퇴사일	재직기간	체불금액(천원)			
					계	임금	퇴직금	기타
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오	하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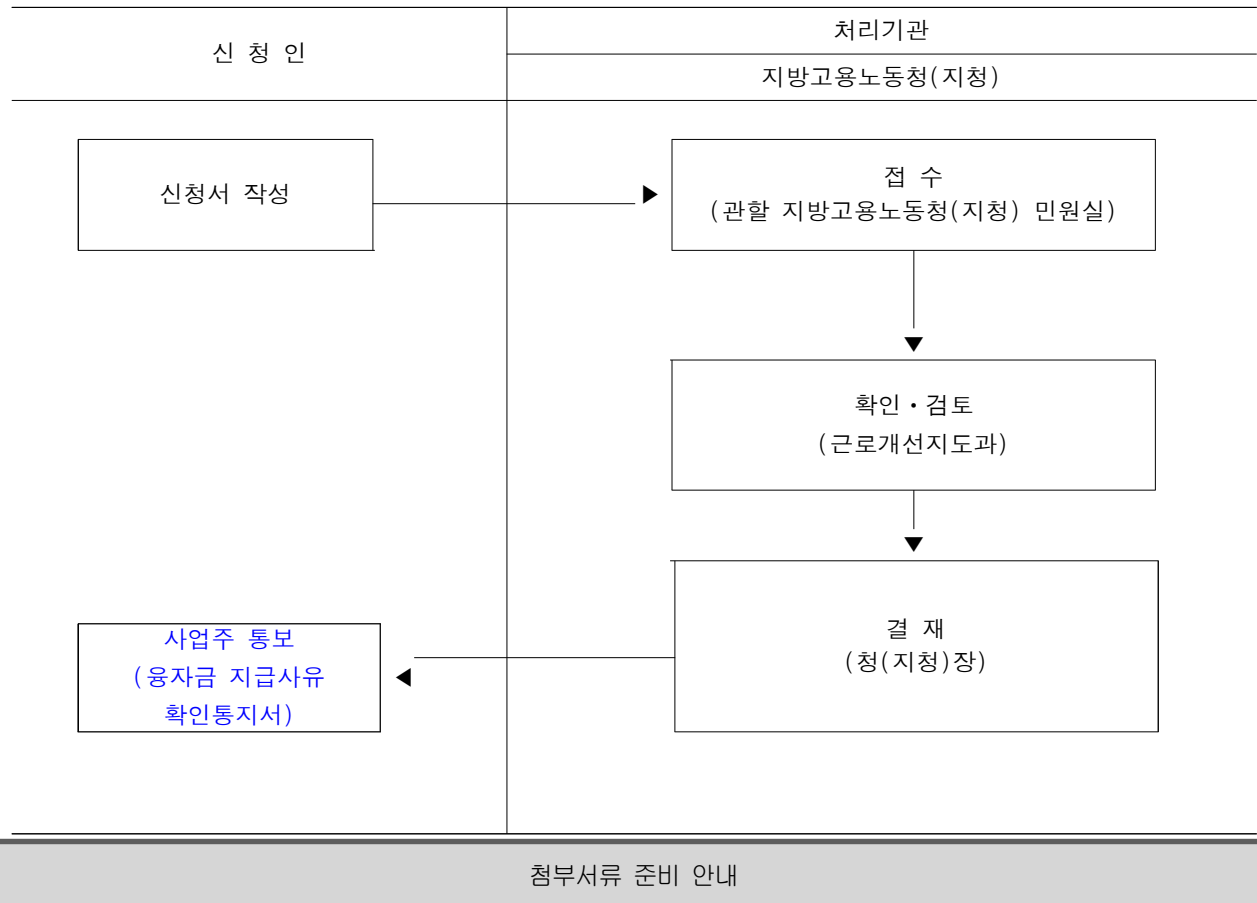
신청인(사업장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에 따른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확인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체불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확인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1. 재고량 증가, 매출액·생산량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2. 사업개시일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의 사업주가 된 날(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기초로 작성합니다.
3.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등 근로자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4. 임금대장, 퇴직금 산정내역 등 체불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입니다.
5.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근로계약서, 4대보험 피보험자격관련 서류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

(앞쪽)

발급번호							
① 체불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위				근무기간		
	임금산정기간				정기임금지급일		
② 체불 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실제 대표자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실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명의 대표자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명의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실제대표자					
		명의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상시 근로자수	
	사업의 종류				사업기간		
③ 적법한 직장 건설업자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실제 대표자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명의 대표자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실제대표자					
		명의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상시 근로자수	
	사업의 종류				사업기간		
④ 체불 임금등 내역 (원)	총 금액	원					
	최우선 변제금	구분	계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계					
		최종 1개월(1년)분 <00년 00월 00일~ 00년 00월 00일>					
		최종 2개월(2년)분 <00년 00월 00일~ 00년 00월 00일>					
		최종 3개월(3년)분 <00년 00월 00일~ 00년 00월 00일>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⑤체불 임금등 및 그 밖의 금품등의 상세내역(원)

구분	합계	임금	퇴직금	상여금	휴업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그 밖의 금품
계							
0000년 00월 <00년 00월 00일~ 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년 00월 00일~ 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년 00월 00일~ 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년 00월 00일~ 00년 00월 00일>							

확인근거			
사용용도 (신청 부수)		확인자	근로감독관 ○○○ (전화번호:)
첨부 서류	1. 2.	참고	①수사 중 ②취하종결 ③기소송치 ④불기소송치 ⑤기소중지 송치

귀하의 체불 임금등 및 사업주에 관한 증명 신청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발급합니다.

20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 비고

1. 퇴직금에 대한 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지 제24호서식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를 첨부합니다.
2. ④체불 임금등 내역란의 최종 1개월(1년)분, 최종 2개월(2년)분, 최종 3개월(3년)분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개월(1년)씩 소급한 기간 동안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등의 내역을 적습니다.
3. ⑤체불 임금등 및 그 밖의 금품등의 상세내역란은 근무한 기간을 월별로 구분하여 아래 예시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시)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2015년 5월 16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2015년 5월 <2015년 5월 1일~5월 16일>, 2015년 4월<2015년 4월 1일~4월 30일>, 2015년 3월<2015년 3월 1일~3월 31일>, 2015년 2월<2015년 2월 1일~2월 28일>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해당 기간의 체불 임금 등의 내역을 적습니다.
4. 대상 사업주가 동일하여 여러 명이 함께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①체불근로자, ④체불 임금등 내역, ⑤체불 임금등 및 그 밖의 금품등의 상세내역란에는 대표 신청인에 대한 내역을 적고, 그 밖의 신청인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별도 서식에 따라 해당 인적사항과 체불 임금등 내역 등을 작성합니다.
5.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발급되고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